

서 면 답 변 서

소 속	평 창 군 의 회	질문위원	박 종 욱 위원	
답 변 자	평 창 군 수 (환경 과장)	일 자	질의	2012년 6월 21일
			답변	2012년 6월 21일
회 의	제186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질문요지

- 제2조(정의)
 1. 좋은식단 실천업소의 선정기준
 2. 가격안정업소의 선정기준

답변내용

1.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외식업 평창군지부에 설치)에서 매년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음식맛,상차림,위생상태,친절도,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심의하여 선정한 모범업소.
2. 물가동향 관리부서(경제체육과)에서 매년 2번(상,하반기) 실시 하는 음식가격이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낮다고 인정하여 착한가격 업소로 지정한 일반음식점.

< 지원대상업소 선정 >

- 지원대상업소 선정은 상기와 같이 좋은식단 실천업소, 가격안정업소, 군의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업소중에서 “평창군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위생업소 관련단체 임직원 및 관광산업, 음식문화 개발사업 관련 전문가 등으로 추후 구성)의 엄격하고 공정한 심의를 거쳐 선정.